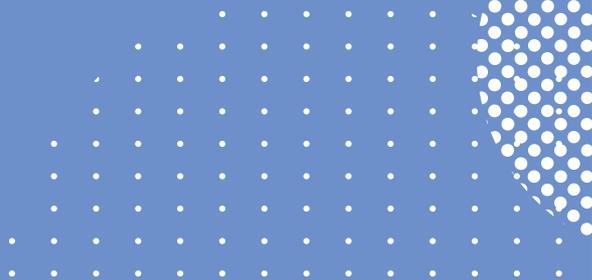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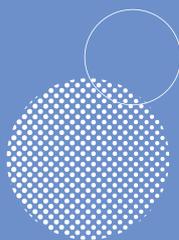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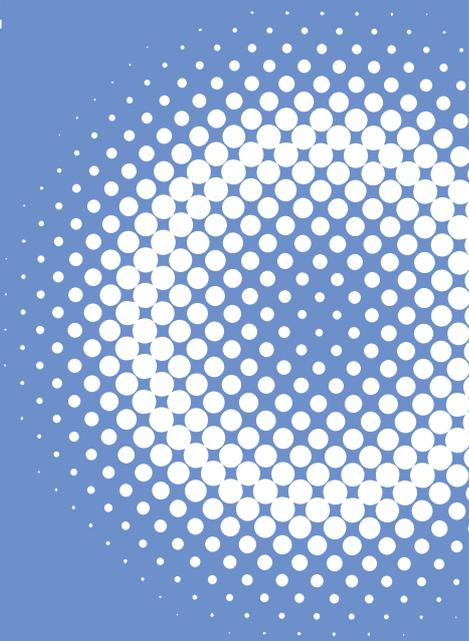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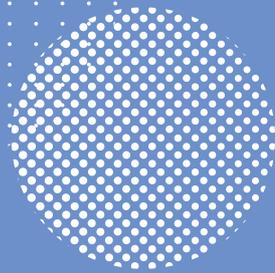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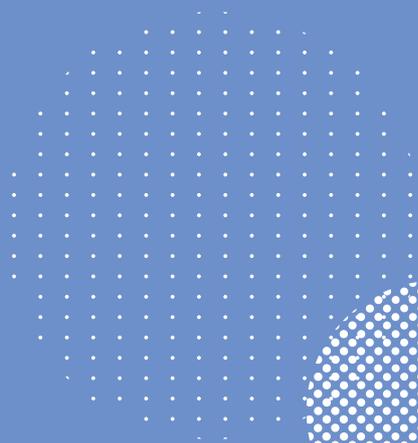


# 04. 공연예술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2021.10.14. ~11.12.	061-900-2194 061-900-2202	92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2021.10.14. ~11.12.	061-900-2192 061-900-2198 061-900-2256 061-900-2208	97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2021.10.14. ~11.8.	061-900-2227	107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 연극	2021.10.14. ~2022.1.21.	061-900-2193	114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 창작뮤지컬		061-900-2196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전제작활동지원 - 연극	2021.10.14. ~11.8.	061-900-2193	119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전제작활동지원 - 창작뮤지컬		061-900-2196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전제작활동지원 - 무용		061-900-2227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전제작활동지원 - 음악		061-900-2205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전제작활동지원 - 전통예술		061-900-2196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연극	2021.10.14. ~11.8.	061-900-2193	127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창작뮤지컬		061-900-2196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무용		061-900-2227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음악		061-900-2205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전통예술		061-900-220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창작오페라		061-900-2205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 음악	2021.10.14. ~11.8.	061-900-2205	138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 전통예술			

##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주요 변경사항

구분	세부내용
지원방식	· 사전·사후 지원 방식 →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
지역균형지원제	· 대한민국 대표공연예술제를 지원하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지원제 미적용 사업으로 변경
심의방식	· 통합심의 → 장르별 심의 방식으로 변경
지원규모	· 우수공연예술제 : 최소 5천만원 이상 ~ 4억원 미만 → 최소 3천만원 이상 ~ 4억원 미만으로 최소 지원금액 변경

### 1.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행사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의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 기반 구축과 국민 향유 기회 확대

###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를 주관할 수 있는 민간문화예술단체 및 공공예술단체
  - \* 전국 규모 : 다양한 지역의 참여예술가(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www.ncas.or.kr) 회원 가입과 본 사업의 지원신청이 가능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단체

- ① 동일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등 공공자원을 지원받는 사업(이중 선정 불가)
  - \* 지자체, 광역·기초 문화예술 단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 ② '22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축제 지원 불가
  - \* 선정이후에 중복지원이 발견될 시에는 환수조치
- ③ 종교행사,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공연, 단체 정기공연 등은 지원 불가
- ④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중 지원신청 부적격자

###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공연예술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

○ 지원유형 및 세부내용

구분	장르대표공연예술제	우수공연예술제
지원대상	· 전국 규모의 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공연예술제 * 기초 공연예술 기반의 복합장르 공연예술제 · '22년도 2월부터 '23년도 1월까지 수행되는 공연예술제	
지원자격	· 10년 이상의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제 (~'21년도 까지의 기준)	· 3년 이상의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제 (~'21년도 까지의 기준)
지원규모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심의를 통해 사업별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 * 공연예술제 행사규모를 반영하여 3억원 이상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다중지원 총량제한 대상사업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 ~ 4억원 미만
제출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 (필수) 해당 공연예술제의 10년간 실적자료	· (필수) 지원신청서 · (필수) 해당 공연예술제의 3년간 실적자료
지원기간	· 다년(3년)	· 단년(1년)
기타	· 심의를 통해 장르대표공연예술제에 신청사업(단체)이 우수공연예술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반영 예정

○ 2022년 사업예산 : 46억 6백만원

###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지원신청서류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li> <li>· 공연예술제 추진 목적의 명확성</li> </ul>
	예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의 수입과 지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li> <li>- (수입) 민간후원금, 지자체보조금, 사업 수입 등 문예기금 외 재원조달 노력</li> <li>- (지출) 예산 편성의 짜임새와 산출근거의 구체성</li> </ul>
	사업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공연예술제로서의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li> <li>· 예술단체(예술가) 구성의 적합성, 추진 일정의 적정성</li> </ul>
	3개년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르대표예술제만 해당) 3개년(2022년~2024년) 사업 계획의 완성도와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li> </ul>
사업수행 역량 (40%)	조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제를 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li> <li>· 자체 성과관리 및 평가관리 계획 여부</li> </ul>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관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의 구체성</li> </ul>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방안의 구체성</li> <li>· 상해보험, 행사보험 등 가입 계획 여부</li> </ul>
사회적 역할 (20%)	사회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li> <li>* 참여예술인과 대 국민의 관점</li> <li>* 공연예술제의 역사성, 보존성, 장르별 희소성, 대상 계층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다양성, 파급력 등 고려</li> <li>· 탄소중립 참여를 위한 계획의 충실성</li> </ul>
	권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표준계약서 적용, 공정보상을 위한 노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방안의 충실성</li> <li>· (국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li> </ul>

##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li>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gt;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li> <li>·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 (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li> </ul>

### ○ 제출자료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2대한민국공연예술제_지원신청서_단체명]</li> <li>·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li> <li>· 지원신청서 내「필수」 실적증빙자료는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li> </ul>
② 동사업 개최 실적 증빙자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서에 「필수」 실적증빙자료 이외 추가 증빙자료</li> <li>· 동일사업에 대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li> </ul>
③ 사업 개최 증빙자료(22년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참가자의 참여 동의서, 공동작업 협약서, 행사 장소 대관확인서 (사용허가서 등) 등 행사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li> </ul>
④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인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li> <li>※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li> <li>※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li> </ul>

※ 필수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유의사항

- 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뮤지컬 분야 : 061-900-2194
  -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 : 061-900-2202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 1. 사업목적

-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 지원(최대 3개년)을 통해 민간분야 창작·제작 역량 향상과 안정적 기반 마련

### 2. 신청자격

#### ○ 지원신청자격

-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법인  
(※ 개인 예술가, 각종 협회, 공연기획사 및 국·공립 단체 신청 불가)
- 지원신청하는 단체의 명의로 최근 3년간 공연을 2건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단체

#### ○ 지원신청유형

신청유형	구분
1. 기존단체_연속지원 단체	○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사업 2019~2021년 선정단체만 해당
2. 신규지원_수도권 소재 단체	○ 단체 소재지 및 활동지역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인 단체
3. 신규지원_비수도권 소재 단체	○ 단체 소재지 및 활동지역이 비수도권인 단체 ○ 2018년 10월 이전 해당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 지원신청분야 :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총 5개 분야

- ※ 뮤지컬 분야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업 신청 시, 분야를 연극으로 선택 후 세부분야를 뮤지컬로 선택
- ※ 다원예술 분야는 사업 및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5개 분야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1개 분야를 택해 신청(심의위원 구성 시 다원예술 분야 심의위원 안배 예정)

#### ※ 필수이행사항

- 선정 단체는 자율적으로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상호 협의·결정하고 창작활동을 추진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현장·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조정합니다.
- 단, 지원기간 3년 중 반드시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공연 발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선정 단체는 사업기간 중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위해 각종 교육, 컨설팅, 평가, 설문 등을 진행합니다.

###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다년간 체계적인 진행과정이 필요한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

※ 단순 창작-발표 형식이 아닌 다년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 중심의 창작 프로젝트

※ 프로젝트에는 리서치, 리허설, 사전공연 제작, 본 공연 제작, 국제교류, 레퍼토리 개발, 신진예술가 발굴 프로그램 등 모든 형태의 활동을 담을 수 있으나, 각각의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주제의식을 담은 프로젝트여야 함

○ 지원내용

- 최대 3개년 동안 창작프로젝트에 대한 리서치·개발·제작·유통 등 전 과정 지원

- 전체 사업비 중 최소 자부담 10% 이상 필수 편성

※ 지원자가 신청한 총 사업비 전액 지원이 아닌 사업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사업유형별, 타 지원사업 선정 여부, 중장기창작지원 사업 연속지원 여부 등에 따라 사업비 정산 시 별도 증빙을 해야 하는 자부담액이 추가될 수 있음

○ 지원규모 및 항목

- 지원규모

지원규모 (정액지원/년간)	비고
1억원	※ 프로젝트 규모(총 사업비/참여인력 수)를 고려하여 1억원/2억원 중 선택하여 신청(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의 규모에 대해서도 심의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 항목을 통해 평가)
2억원	

- 지원항목

구분	항목	비고
편성가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추진 및 단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li> <li>-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양식 별도 제공) 체결, 원천징수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필수</li> <li>· 공연, 워크숍, 리서치, 투어 등 진행 시 상해보험, 산재보험, 여행자 보험 등 가입 필수</li> <li>- 대표자 사례비 편성 가능(총액 등은 참여자 평균 사례비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li> <li>- 각종 보험료 단체부담금 편성 가능</li> </ul>	<p>※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해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충분한 대우, 사전 표준계약서 체결(전자서명 우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상해 및 산재보험 가입 필수, 이에 대한 지원금 편성 필수</p>

구분	항목	비고
편성가능 항목	· 총 보조금의 30% 내에서 단체 경상경비 편성 가능 -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 일반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사무실, 연습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각종 세금 등)을 보조금의 30%내에서 편성 가능	※ 공연장 안전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필수 이행 사항 추가 예정
편성불가능 항목	· 보조금 관리 규정 및 문예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기획사 및 대행사에 세금계산서를 통한 지출 불가 (기획 및 대행 인력은 개인 사례비로 지출 가능)	

○ 2022년 사업예산 : 70억원

- 기존단체 연속 지원, 신규지원(수도권 소재), 신규지원(비수도권 소재) 3개의 유형으로 구분, 각 유형별 신청건수 및 신청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배분
- 특정 유형에 대한 보조금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이 배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유형별 총 지원금의 최소, 최대 금액을 별도로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음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① 2022년 타 지원사업 신청·선정 프로젝트(작품) - 신청작품과 동일한 프로젝트(작품)로 국고보조금,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 ②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작품) ③ 3년간의 프로젝트 전체가 단순 번역극, 전통예술 원형의 단순재현 및 일부차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년간 창작 프로젝트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하는 프로젝트(3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간 과정으로 단순 번역극, 단순재현 및 일부차용이 가능함) ④ 각종 축제성·정기연주회 등 공연예술단체의 연례행사 및 프로그램 ⑤ 문예진흥기금 공통 규정에 따른 제외대상

※ 타 보조사업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공연이나 프로젝트가 다를 경우에 한하며, 동일한 작품이나 프로젝트일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대상사업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참고사항
문예기금 타 보조사업 * 공연예술창작산실,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과기술 융합지원, 예술인력 육성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등	가능	○ 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타 지원사업과의 내용이 완전히 다를 경우(작품, 출연진 구성 등)에 한하여, 공연단체는 타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신청 가능
타 기관(재단) 보조사업	가능	○ 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타 지원사업과의 내용이 완전히 다를 경우(작품, 출연진 구성 등)에 한하여, 공연단체는 타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신청 가능
축제나 극장 등의 초청공연	가능	○ 축제나 극장이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더라도 초청 가능 ○ 단, 축제나 극장이 주최하는 기획프로그램일 경우 사전 협의 필요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	불가	○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지역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타 보조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보조금 중복 증빙 및 대체는 불가하며 사례비 중복 지급, 대체, 페이백 등 발생 시 제재 조치 진행

####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행정 심의, 2차 서류 심의, 3차 PT 및 인터뷰 심의(대상자에 한함)

구분	심의방법	필수준비사항
1차 행정 심의	· 지원신청 대상 여부, 타 사업 중복신청 여부,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점검 및 결격 여부 점검	· 국가문화예술시스템 단체정보 업데이트 -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로그인 > 내정보방 > 기본정보(연혁, 활동실적 등), 인력/재정 현황 등 업데이트  · 지원신청서 및 필수제출자료 제출 ※ 필수제출자료 :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항목 참고 ※ 단체정보 미업데이트, 필수제출자료 미제출시 결격 처리
2차 서류 심의	· 지원신청서 내용 심의 및 3차 PT 및 인터뷰 심의 대상 결정	-
3차 PT 및 인터뷰 심의	· PT 및 인터뷰 기반 2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단체 대표자 필수 참가 · 자세한 사항은 해당단체 별도 안내 예정

○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단체 정체성 (10%)	단체의 정체성 (10%)	· 단체의 일반 현황 · 단체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 단체의 정체성과 비전이 명확하게 내·외부에 공유되고 있는가? - 단체의 정체성에는 진정성과 독창성이 있는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단체역량 (40%)	단체의 활동 실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의 활동이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몇 년 간 단체가 고민하던 주제, 담론, 문제의식 또는 사회와 예술계의 화두, 담론, 문제의식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li> <li>- 그 주제, 담론, 문제에 대응하여 단체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li> <li>- 그 성과는 무엇이었고, 파급효과는 어떠했는가?</li> </ul> </li> <li>· (비수도권 소재 신청단체만 해당) 해당 소재지에서의 문화예술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li> <li>· (1기 연속지원 단체만 해당) 1기 사업의 성과가 단체의 기존 활동에 비해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었는가? 또한, 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타 보조사업간의 양적, 질적인 차별성이 있었는가?</li> </ul>
	단체의 운영 실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의 운영은 체계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원)구성의 안정성,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과 체계성</li> <li>- 구성원 모집 및 선발 과정, 교육 체계, 구성원에 대한 보수 체계(최저임금 준수 여부), 구성원 근무조건외 합리성과 타당성</li> <li>- 단체의 고유한 운영체계 및 운영협약 등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li> </ul> </li> <li>· 단체의 운영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인력의 안정망) 4대 보험 납부 기록,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기록, 상해 및 산재 보험 납부 기록 등이 충분한가?</li> <li>- 단체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위계에 의한 갑질, 임금 미지급 및 페이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과 작동체계가 있는가?</li> </ul> </li> </ul>
사업계획 (40%)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비전 및 전략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몇 년 간 단체가 다루고 싶은 주제, 담론, 문제 또는 사회와 예술계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는 무엇인가?</li> <li>- 그 주제, 담론, 문제에 대해 단체는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li> <li>- 사업계획이 기존 단체의 활동이나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면 기존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심화되었는가?</li> <li>- 제시한 예술적인 목표가 새로운 것이라면, 단체의 기존 프로젝트나 활동에 비해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가?</li> <li>- 사업계획이 단체의 정체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li> <li>- 활동 과정에서 예술적 수월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li> </ul> </li> <li>· 제시한 예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도별, 월별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가?</li> </ul>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 (40%)	사업예산의 타당성 및 공정성 (10%)	· 단체가 제시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가? -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이 보조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가? -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사업의 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있는가? ·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단체의 재정 자립도 및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 기대효과 (10%)	사업의 기대 효과 (10%)	· 본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단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또한, 단체는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 · 본 프로젝트가 사회 또는 예술계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가 있는가? · (비수도권 소재 신청단체만 해당) 단체의 활동 성과가 해당 소재지를 넘어서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가?

##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시, 단체 명의로 등록 및 지원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지원신청사업 등록 시 신청 단체의 유형에 따라 1. 기존단체\_연속지원, 2. 신규지원\_수도권 소재 단체, 3. 신규지원\_비수도권 소재 단체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서류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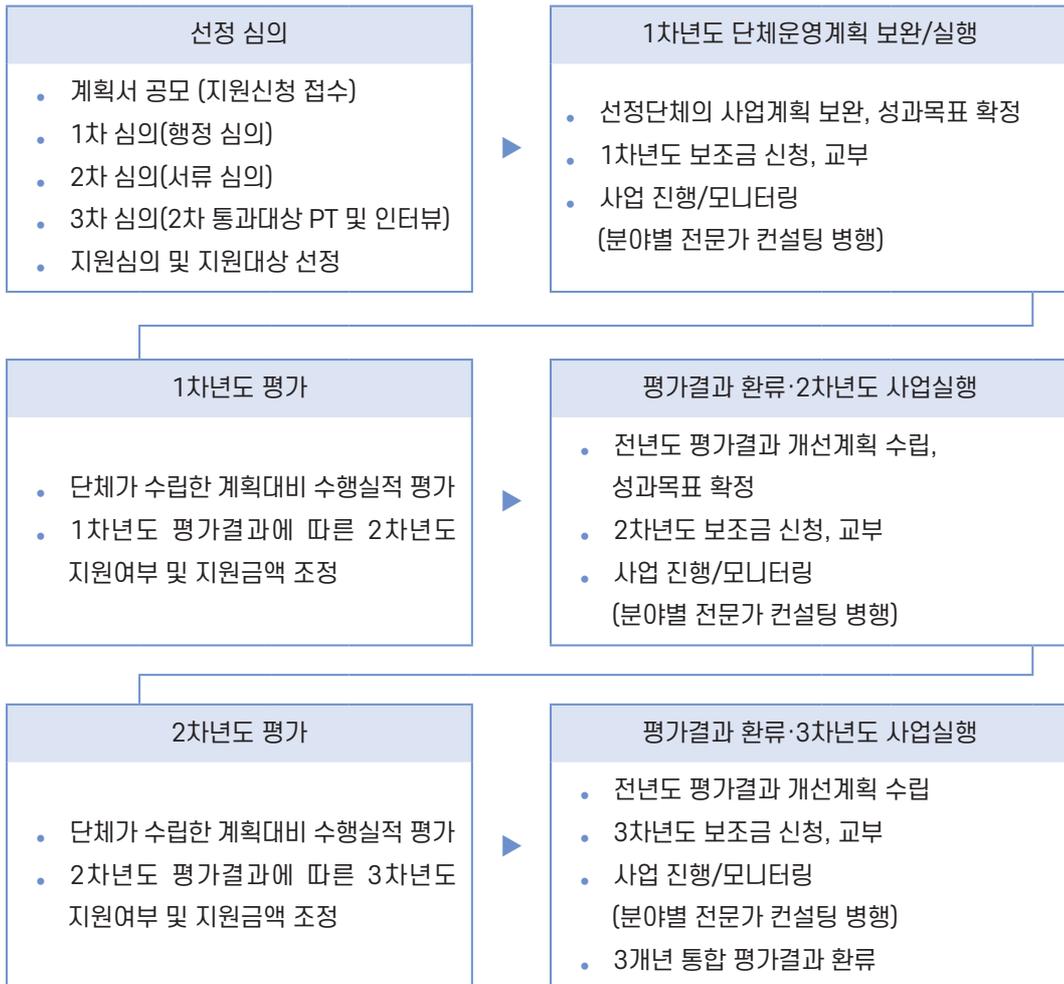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한글파일, 엑셀파일 2종)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 (한글 파일, 엑셀파일 2종)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한글파일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엑셀파일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_예산 및 인력_단체명 · NCAS에서 단체 정보 업데이트 필수_단체 연혁 및 구성원 등에 관한 정보는 NCAS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심의 자료로 활용
② 단체설립 증빙자료	필수	·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본
③ 단체 법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필수	· 최근 3년간(2018~2020년) 단체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1기 연속지원단체만 해당) 최근 3년간 대표자 사례비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자 종합소득신고 내역 ※ 단체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있을 경우 대표자의 최근 3년간 종합소득신고 내역 제출
④ 예술인고용보험 증빙자료	필수	· (해당 시) 예술인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서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공연이 있었을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 ※ 자료출력방법 : <a href="https://total.kcomwel.or.kr">https://total.kcomwel.or.kr</a> > 로그인 > 사업장 > 정보조회 > 고객용 징수금카드조회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확인서	필수	· (해당 시) 문예진흥기금 및 타 기관, 재단 보조사업 수행 시 의무화된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확인서 ※ 2021년 기준 수료내역에 대해서만 제출
⑥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단체 자체 정관, 내부 규약 등의 사본 · 단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기록 등 · 최근 단체 활동내역 증빙 자료(책자, 음원, 영상 등) · 중장기 프로젝트 관련 자료 : 프로젝트 제작 계약서 및 MOU 등

##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 지원신청 및 심의 일정



### ○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2기(2022년~2024년) 연도별 사업추진 절차



---

##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뮤지컬/사업총괄 061-900-2192
  - 무용 061-900-2198
  - 음악 061-900-2256
  - 전통예술 061-900-2208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주요 안내사항

구분	세부내용
코로나19 대응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단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을 준수</li> <li>·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변경은 지원신청서 상의 기존 목적과 선정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체 가능, 사업취소는 단체의 판단에 따름</li> <li>· 사업이 변경, 취소된 경우 기 집행한 비용은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에서 정산 가능(단, 보조금 집행 기간은 사업종료일까지)</li> </ul>
지원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개인 비평활동 지원&gt;유형 지원규모 확대 (2백만원→3백만원)</li> <li>- 발전가능성 있는 공연 평론가의 비평활동 지원 강화</li> </ul>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 예술인에 대한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보조금 내 일반수용비로 편성 가능)</li> </ul>
영유아 자녀 돌봄비 편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 예술인에 대한 영유아 자녀 돌봄비 편성 가능 (증빙자료 제출 필수, 보조금 내 일반수용비로 편성 가능)</li> </ul>

### 1. 사업목적

- 공연예술계의 담론을 형성하여 창작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창작자에게는 영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

###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연예술 분야 비평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 다원예술 분야는 사업 및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5개 분야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1개 분야를 택해 신청(심의위원 구성 시 다원예술 분야 심의위원 안배 예정)

○ 자격요건

구분	세부내용
① 비평 전문매체 지원(단체)	최근 2년(2020년~2021년)이상 공연예술 분야 전문매체 발간·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전문지발간 및 디지털매체 운영)
②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최근 2년(2020년~2021년)이상 공연예술 분야 비평·연구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③ 개인 비평활동 지원(개인)	최근 2년(2020년~2021년)이상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공연예술 분야 비평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

###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구분	세부내용
① 비평 전문매체 지원	공연 리뷰, 비평문, 국내외 각종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전문매체를 정기적으로 발간·운영하는 사업(예시 : 전문지, 웹진, 팟캐스트, 모바일 어플 등)
②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비평·연구집 발간 사업 및 비평관련 주제, 인물, 이슈 등을 설정하여 기획된 학술행사 ※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③ 개인 비평활동 지원	공연예술 분야 비평활동(비평을 위한 조사연구 포함) ※ 전문지, 신문, 웹진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비평문 기고에 한함 ※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등), 블로그, SNS 등 단순 게재 불인정 ※ 연간 비평 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함 (비평문 기고 최소 3회 이상)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① 단순 협회지 발간사업
- ② 공연예술 비평 및 연구에 관하여 특정 목적성 없이 단순 연례행사 성격을 갖는 활동
- ③ 디지털 매체를 통한 단순 공연 홍보활동, 단순 감상문, 타인의 비평문을 단순 게재하는 활동
- ④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개인)는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지원신청 공통조건 • 지원신청 부적격자: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 비평 전문매체 지원,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 개인 비평활동 지원 : 1인당 3백만원 정액지원
- ※ 본 사업은 비평 및 담론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적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자부담 적용 제외

○ 지원규모 :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구분	세부내용
① 비평 전문매체 지원	(전문지발간/월간) 최대 5천만원
	(전문지발간/비월간) 최대 2천만원
	(디지털매체운영) 최대 2천만원
②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최대 2천만원
③ 개인 비평활동 지원	3백만원 정액지원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세목	항목	사업구분
일반수용비	· 사례비(원고, 발제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발간비 및 인쇄비 · 운송비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 자녀 돌봄비 · 회계검사 수수료	비평 전문매체 지원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필수)

세목	항목	사업구분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학술행사 장소 대관료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등	공통

- ※ 개인 비평활동 지원의 경우, 포상금 형태로 지원되므로 정산 의무 없음 (단, 2022년 중 공연예술 비평 전문매체에 최소 3회 이상 비평문을 기고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은 실적보고서 제출 시 첨부(양식 제공))
- ※ 개인 비평활동 지원 선정자는 본 공모사업 선정단체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고료 중복 수령 불가
-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2022년 사업예산 : 3억원
- 비평 전문매체 지원 : 2억 7천만원(민간경상보조)
- 개인 비평활동 지원 : 3천만원(포상금)

####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등 필수제출자료)

-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평 전문매체 지원_전문지발간)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타 매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li> <li>- (비평 전문매체 지원_디지털매체운영) 비평활동 계획이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가?</li> <li>-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비평담론 생산을 위한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가?</li> <li>- (개인 비평활동 지원) 비평 기고 계획 등 연간 비평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가?</li> </ul> </li> <li>·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li> </ul>
사업운영의 전문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효과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역할에 따른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li> <li>· (단체)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li> <li>· (개인) 공연예술 비평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li> </ul>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의 확산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평 전문매체 지원_전문지발간) 배포, 유통, 홍보 전략이 구체적인가?</li> <li>- (비평 전문매체 지원_디지털매체운영) 매체 접근성이 용이하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성과 확산이 가능한가?</li> <li>-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결과자료집 제작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 공유가 가능한가?</li> <li>- (개인 비평활동 지원) 비평활동의 성과물을 통하여 저명 비평가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li> </ul> </li> <li>·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 외부평가,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li> </ul> </li> </ul>

##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li>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li> </ul>

### ○ 제출자료

-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li> <li>· 파일명 : 2022년도_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개인)명</li> </ul>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② 최근 2년간 활동실적 증빙 자료 (2020년 ~2021년)	필수	<b>①-1. 비평 전문매체 지원(전문지 발간)</b>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최근 2년간 발간물의 표지를 포함한 본문 인쇄 시안 PDF 포맷으로 제출(용량 최소화) <b>①-2. 비평 전문매체 지원(디지털매체 운영)</b>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최근 2년간 관련 활동 사진 및 내역, 결과물 PDF 포맷으로 제출 <b>②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b>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최근 2년간 관련 활동 사진 및 내역, 결과물 PDF 포맷으로 제출 · PDF 포맷 파일 1개 용량 최소화 후 제출(20페이지 내외, 기존 성과물 및 비평활동 관련 이미지, 리플렛 등) <b>③ 개인 비평활동 지원</b>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최근 2년간 전문매체에 기고한 비평문 3편 이상 PDF 포맷으로 제출(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진위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실물 스캔 또는 해당화면 캡처 ※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등), 블로그, SNS 등에 단순 게재한 실적은 불인정하며 언론사, 전문지, 웹진 등 전문매체 기고 실적에 한함
③ 출판약정서		· 비평 전문매체 지원(전문지발간)의 경우 필수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첨부파일' 탭에 첨부

##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227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 연극, 창작뮤지컬

### 1. 사업목적

- 무대 공연 발표 및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한 참신한 작품을 발굴하여 무대화 전 단계 지원 강화
- 순수 창작작품 공모를 통해 창작자 창작의욕 고취 및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추동력 확대

###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극작가 및 작곡가 개인
- 자격요건
  - 작가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창작뮤지컬의 경우 1인이 대표하여 신청
  - 연극, 창작뮤지컬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응모작품의 저작자와 지원신청자가 동일해야 함(대리 지원 불가)
    - ※ 시놉시스 및 대본, 악보에 신청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정보를 노출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공연화가 가능한 완성된 대본(공연시간 1시간 이상 분량)
  - 미 발표된 연극 대본 및 창작뮤지컬 대본/음악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물
    - ※ 각색·번안 작품 제외(원형의 모티브만 사용, 소재인용을 통한 전체 재창작은 가능)
    - ※ 본인이 집필한 다른 장르의 문학(소설, 동화 등)이 미발표작일 경우에만 동일한 내용의 각색 작품 제출 가능

####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① 공연화 된 작품
  - ※ 준비단계 공연(예술단체 및 학교 내부 워크숍, 쇼케이스, 낭독공연)은 미발표 작품으로 간주
  - 준비단계 공연이더라도 유료공연은 발표작품으로 간주(관람료 대신 공연종료 후 후원금, 감동 후불제 형태의 지불이 있는 경우도 유료공연으로 간주)
  - 무료 및 학내공연(준비단계 포함)이더라도 일반대중을 모객 대상으로 발표한 공연 및 공연실황 OTT 송출이력이 있는 작품은 발표작품으로 간주
- 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여 지면에 발표된 작품
- ③ 공연제작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다수의 제작진에게 대본이 공유되었거나, 상세 시놉시스를 포함한 구체적인 제작계획이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작품

<p>※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p> <p>④ 출판물로 발간된 작품(비영리 목적, 자료집 포함)</p> <p>⑤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및 민간 공모사업 선정 및 수상 작품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시놉시스 및 제작계획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 멘토링 등 간접지원은 받았으나, 낭독공연 등 준비단계 구현 또는 집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일체 받지 않은 작품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p> <p>⑥ 기타 사유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공연 또는 발표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p> <p>⑦ 신청인이 대본의 실제 저작자로 규명하기에 불분명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작품</p> <p>⑧ 2인 이상 공동창작 작품(극작/작곡 분야 모두 포함)                  ※ 지원 발표 이후에 작품 또는 신청자의 결격사유나 보조금법 위반행위 확인 시, 전면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p>
--

○ 지원내용

구분	지원자격	지원금
연극	극작가 개인	최대 3천만원
창작뮤지컬	극작가 및 작곡가 ※ 1인 대표로 지원신청	최대 5천만원

※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작품 편수 및 지원액 결정

※ 창작물에 대한 개인별(극작가, 작곡가) 포상금 형태의 지원으로 자부담 적용 제외

○ 2022년 예산 : 4억원(연극 2억원, 창작뮤지컬 2억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지원자 비공개 심의(블라인드 심의)
- 서면심의(예심-본심 단계별 서면심의 후 심사결과 일괄 발표)

○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작품의 예술성(60%)	<p>&lt;연극, 창작뮤지컬 공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주제와 소재, 구성 등 미학적 요소가 창의적이고 우수한가?</li> <li>· 창작의도가 관객에게 잘 전달되도록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가?</li> </ul> <p>&lt;창작뮤지컬만 해당&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본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음악을 구성하였는가?</li> </ul>

심의기준(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작품의 무대화 발전가능성 (20%)	· 무대화되기에 적합한 작품인가? · 공연용 대본으로서 상당한 수정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희곡이 가진 요소만으로 완성도 있는 공연제작이 가능한가?
작품의 지속가능성 (20%)	· 해당 작품이 레퍼토리 공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 해당 작품이 다양한 갈래의 무대화 등을 통해 가치가 재발견 될 가능성이 있는가?

##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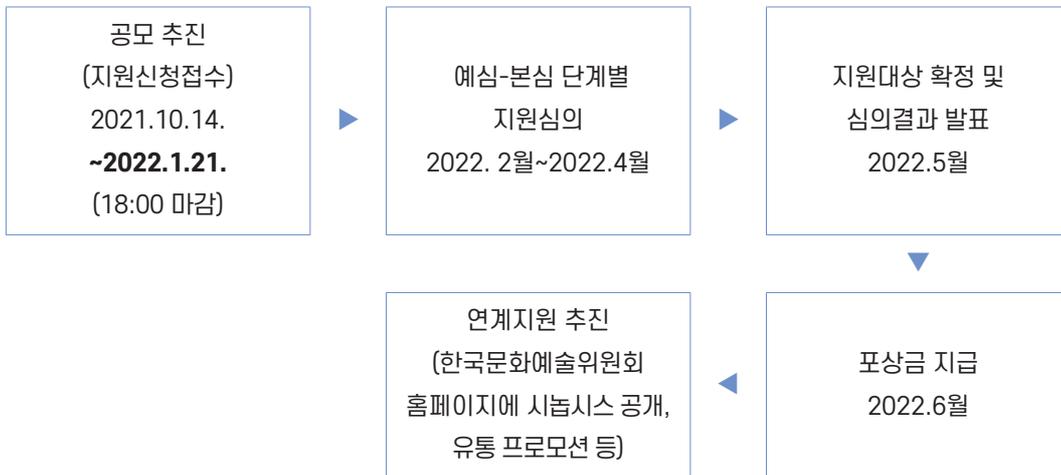
### ○ 제출자료

-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지원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자료(시놉시스 및 대본, 악보)에 신청자 이름 등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정보를 노출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해당장르	제출자료 및 방법	구분
연극, 창작뮤지컬 공통	1. 지원신청서(HWP 형식) / 지정양식 사용 및 NCAS시스템 업로드	공통 필수
	2. 대본(HWP 형식) / 지정양식 사용 및 NCAS시스템 업로드	
	3. 시놉시스(HWP 형식) / 지정양식 사용 및 NCAS시스템 업로드	

해당장르	제출자료 및 방법	구분
창작뮤지컬만 해당	4. 악보(A4규격, PDF 형식) / 웹하드 제출 : 8곡 이상 ※ 블라인드 심의로 악보에 작곡가나 작가를 알 수 있는 메모나 성명 명기 금지	창작 뮤지컬 필수
	5. 음원(mp3 또는 WAV 형식) / 웹하드 제출 : 8곡 이상 ※ 음원의 경우, 육성 노래가 생략된 순수 악기 연주로만 녹음된 파일 제출(노래의 멜로디 포함)	

###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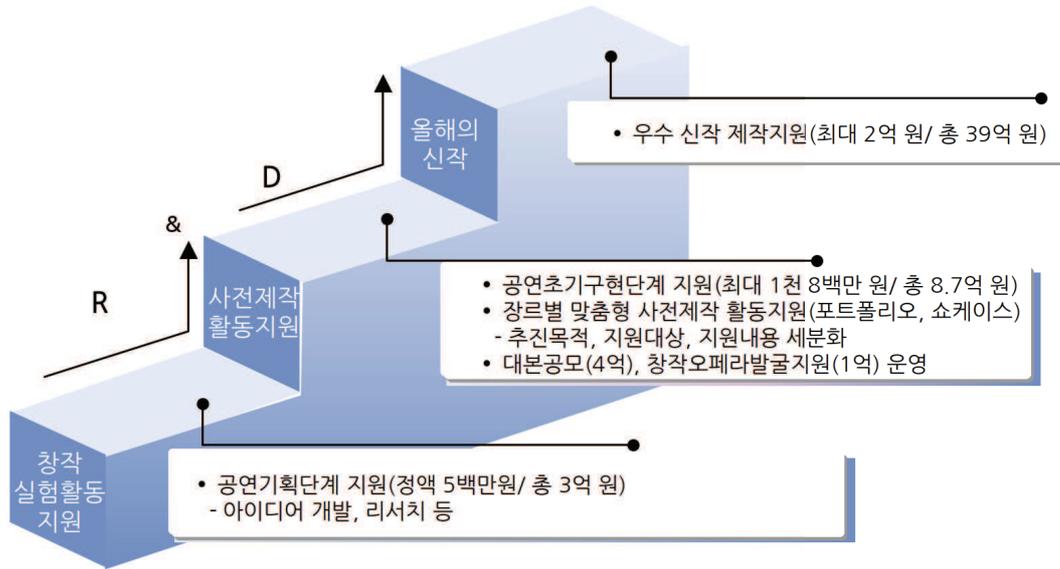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분야 061-900-2193
- 창작뮤지컬분야 061-900-2196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창작산실 단계별 제작지원 체계도



## 사전 제작 단계 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 ○ 창작실험활동지원(별도공모)



### ○ 장르별 신작 사전제작활동지원(정시공모)



※ 차년도 '올해의신작' 사업 신청여부는 사전제작활동지원 선정단체(개인) 자율적 선택으로 전년도 사전제작활동지원 지원을 통해 발굴한 신작 작품 신청 가능합니다.

※ 동일년도 '사전제작활동지원', '올해의신작'은 동일내용으로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공연예술창작산실)사전제작활동지원 -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 주요 안내사항

구분	세부내용
사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르별 특성에 따른 신작 기획 및 제작 준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작기반 마련</li> <li>- (기존)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 운영 → (개선) 창작실험활동지원(별도공모) 장르별 신작제작을 위한 사전제작활동지원</li> </ul>
코로나19 대응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단체는 단체 구성원과 관객의 안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을 준수</li> <li>·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변경은 지원신청서 상의 기존 목적과 선정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무관객 공연영상제작, 고품질 영상제작, 워크숍, 비평 및 리서치 등의 방식으로 대체 가능, 사업취소는 단체의 판단에 따름</li> <li>· 사업이 변경, 취소된 경우 기 집행한 비용은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에서 정산 가능(단, 보조금 집행 기간은 사업종료일 까지)</li> <li>·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최대 30%까지 소급 편성 가능</li> </ul>
예술인고용보험·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자 전원 예술인고용보험·상해보험 필수 가입(보조금 내 편성 지원)</li> </ul>
영유아 돌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 대상 영유아 돌봄비 지원(보조금 내 편성 지원)</li> </ul>
중복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창작실험활동지원(별도공모 예정)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불가</li> <li>· 2022년 올해의신작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불가</li> <li>· (2022~2024)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불가</li> </ul>

### 1. 사업목적

- 장르별 특색을 살린 작품 기획 및 제작 준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 제공
- 창작자 중심의 작품제작 환경조성을 통한 기획역량 제고 및 안정적인 프리프로덕션 기반 마련

## 2. 사업 추진 방침

-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창작오페라\* 분야 기초 공연 예술 장르의 특성을 살린 신작 사전 제작 준비단계를 중점 지원하여 향후 초연 공연(올해의신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을 다짐으로서, 단계별 창작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사전제작지원 중 '창작오페라발굴지원'은 별도공모(22년 3월)로 추진 예정

##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연예술 단체\* 및 개인, 프로젝트 그룹\*
- ※ 프로젝트 그룹(팀)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소지한 '단체'와 달리 본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개인예술가 중심의 집단을 지칭하며, 그룹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
- ※ 기존 프로젝트 그룹(팀)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
- 자격요건 : 최근 3년 이내(2019~2021) 신청 사업에 해당되는 기초 공연 예술 장르(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연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 가능한 예술인 (※ PPT 양식 제공)
- ※ 경력단절(임신, 육아, 병역 등)의 경우, 경력단절 기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

## 4. 공통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기초 공연 예술 장르(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를 기반으로 한 공연 초기 구현 단계의 창작활동 지원

### ※ 지원 제외 대상

- ① 공연화된 작품
  -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단, 유료공연 제외)으로 간주
- ②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및 프로젝트
  - ※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③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
  - ※ 저작권 분쟁소지가 있는 작품의 경우, 공연 이용·활용에 대한 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④ 심사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
- ⑤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상세내용

- 신작 제작 전단계(기획 및 개발) 창작활동과정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본 사업은 제작실현 전 단계의 창작 과정지원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적용 제외

○ 지원규모 : 사전제작활동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신작 사전제작활동 참여 전문가)- 연출가, 극작가, 기획자, 무대미술 등 · 워크숍, 기획 관련 운영비, 활동사례비 · 회계검사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 돌봄비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단, 지원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인정)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예술인 고용보험료 · 상해보험 가입 필수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연습실 대관료	※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 관련 우편요금, 상해보험료	(단,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5. 장르별 사업내용

연극	
구분	주요 내용
추진목적	연극 신작 발굴을 위한 사전제작활동 지원
지원대상	연극분야 종사자(단체, 개인(연출가, 기획자(PD), 작가, 배우, 드라마투르그, 공동창작 등)
지원내용 (활동예시)	신작 콘텐츠 창작을 목표로 제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활동 (예시) 제작기획단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창작활동의 콘셉트 및 예산계획을 담은 기획안(포트폴리오) 완성 (예시) 연출안, 작품 기획, 극작준비, 드라마투르그, 워크숍, 낭독회, 쇼케이스 등
지원규모	(포트폴리오) 최대 8백만원, (쇼케이스) 최대 15백만원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활동증빙자료(PPT) (선택) 저작권 관련 증빙, 기타 실적 증빙
최종 결과물	포트폴리오 / 쇼케이스 중 택1

창작뮤지컬	
구분	주요 내용
추진목적	창작뮤지컬의 다양성·역동성·창의성 확보를 위한 사전제작활동 지원
지원대상	뮤지컬분야 종사자(단체, 개인(연출가, 기획자(PD), 작곡가, 배우, 메인디자이너 등))
지원내용 (활동예시)	신작 콘텐츠 창작을 목표로 아이디어 개발 및 기획 (예시) 작품 기획단계 콘셉트 확정(주제 결정, 음악 작곡, 의상·무대 디자인 작업 등), 예산계획을 담은 최종 기획안(포트폴리오) 완성(창작뮤지컬 대본, 창작곡 악보 및 음원(최소 4곡), 각 파트별 디자인 컨셉 시안 등)
지원규모	최대 15백만원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활동증빙자료(PPT) (선택) 저작권 관련 증빙, 기타 실적 증빙
최종 결과물	포트폴리오

무용	
구분	주요 내용
추진목적	창작무용 신작의 동시대성 확보를 위한 사전제작활동 지원
지원대상	안무가, 기획자(PD)
지원내용 (활동예시)	신작 창작을 목표로 제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활동 (예시) 제작기획단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창작활동(주제결정 및 음악작곡, 의상· 무대디자인, 안무 등)의 콘셉트 및 예산계획을 담은 기획안(포트폴리오) 완성 (예시) 의상, 무대세트 제작을 제외한 음악, 안무 작업 완성 (예시) 작품 러닝타임에 비례한 쇼케이스 발표
지원규모	(영상(스케치 영상 등) 및 포트폴리오) 최대 10백만원, (쇼케이스 및 포트폴리오) 최대 18백만원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활동증빙자료(PPT) (선택) 저작권 관련 증빙, 기타 실적 증빙
최종 결과물	결과물 영상 및 포트폴리오 / 쇼케이스 및 포트폴리오 중 택1

음악	
구분	주요 내용
추진목적	음악 공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전제작활동 지원
지원대상	음악단체, 음악가, 프로젝트 그룹(예시 : 작곡가+기획자+연주자 등)
지원내용 (활동예시)	창작곡 제작 및 음악 공연 콘텐츠 제작 준비 활동 등 (예시) 제작기획단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창작활동의 콘셉트 및 예산계획을 담은 기획안(포트폴리오) 완성 (예시) 작곡 소재 채집 및 리서치, 긴 제작 기간이 필요한 대규모 작품(다양한 형태의 앙상블, 관현악, 음악극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실험음악 구상 및 제작, 음악 중심 타 장르 협업 작품 등 ※ (기존의) 실내악, 관현악, 성악곡 등과 같이 악보에 기반하여 공연하여 프리 프리덕션이 필수적이지 않는 작품들, 즉 전통적 연주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은 “올해의 신작” 사업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함.
지원규모	(포트폴리오) 최대 8백만원, (쇼케이스) 최대 15백만원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활동증빙자료(PPT) (선택) 저작권 관련 증빙, 기타 실적 증빙
최종 결과물	포트폴리오(창작곡 악보·음원 또는 영상 제출 가능) / 쇼케이스 중 택1

전통예술	
구분	주요 내용
추진목적	전통예술 신작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전제작활동 지원
지원대상	전통예술분야 종사자(창작자(작가, 작곡가 등), 실연자, 기획자 등)
지원내용 (활동예시)	전통예술 공연 콘텐츠 제작 준비 활동 등 (예시) 제작기획단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창작활동의 콘셉트 및 예산계획을 담은 기획안(포트폴리오) 완성 (예시_극형식) 작품 개발을 위한 리서치, 시놉시스, 대본을 포함한 작품 기획 활동 등 (예시_국악) 주제결정 및 음악작곡, 악기 편성, 연주자, 의상·무대디자인 등
지원규모	(포트폴리오 또는 영상(스케치 영상 등)) 최대 10백만원, (쇼케이스) 최대 15백만원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활동증빙자료(PPT) / (선택) 저작권 관련 증빙, 기타 실적 증빙
최종 결과물	포트폴리오/ 영상 /쇼케이스 중 택1

## 5. 지원심의

###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022년도 지원신청서(사전 제작 활동계획서), 활동실적 증빙자료  
※ 저작권 분쟁소지가 있는 작품의 경우, 공연 이용·활용에 대한 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2차) 인터뷰심의 : (대상자에 한해) 작품 기획 의도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층인터뷰  
※ 2차 심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영상 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음

### ○ 지원심 의 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기획의 창의성 (40%)	· 기획 의도와 목적이 독창적인가? · 공연 제작의 준비단계에 필요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 작품개발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예술적 성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활동계획의 구체성 (40%)	· 참여자의 창작활동이 향후 제작될 공연과 연계성이 확보되어 실현가능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 추진방법과 내용이 체계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창작활동의 일정과 참여 인력 등이 계획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예산계획의 적정성 (20%)	· 사전제작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체적이며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 ○ 2022년 예산 : 8억 7천만원

- 연극 : 1억 5천만원
- 창작뮤지컬 : 1억원
- 무용 : 2억 2천만원
- 음악 : 2억원
- 전통예술 : 2억원

##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http://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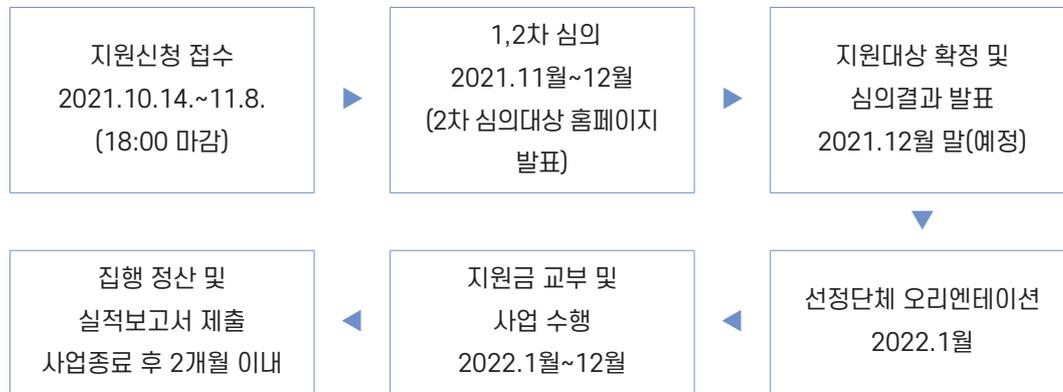
<p>※ 신청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프로젝트 그룹이 수행하는 사업은 대표 1인의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li>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li> </ul>
--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필수	① 지원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2년도_사전제작활동지원(00분야)_지원신청서_단체명)</li> <li>·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li> </ul>
	② 활동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포트폴리오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2년도_사전제작활동지원(00분야)_활동증빙자료_단체명)</li> <li>· 최근 3년 이내(2019~2021) 신청 사업에 해당되는 기초 공연 예술 장르(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음악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연 창작활동에 대한 증빙</li> <li>· 신청서는 PPT 형식이며, 지정된 파일양식 외 접수 불가 PDF로 변환하여 제출 필수 - (음원, 영상) 양식 내 링크삽입</li> <li>※ 경력단절(임신, 육아, 병역 등)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기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li> </ul>
선택	③ 저작권 관련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li> </ul>
	④ 기타 작품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북 스캔본, 리뷰 스캔본, 대본, 악보 등 필요 시 제출</li> </ul>

## 7.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분야 061-900-2193
  - 창작뮤지컬분야 061-900-2196
  - 무용분야 061-900-2227
  - 음악분야 061-900-2205
  - 전통예술분야 061-900-2204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창작오페라

※ 주요 안내사항

구분	세부내용
코로나19 대응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단체는 단체 구성원과 관객의 안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을 준수</li> <li>·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변경은 지원신청서 상의 기존 목적과 선정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무관객 공연영상제작, 고품질 영상제작, 워크숍, 비평 및 리서치 등의 방식으로 대체 가능, 사업취소는 단체의 판단에 따름</li> <li>· 사업이 변경, 취소된 경우 기 집행한 비용은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에서 정산 가능(단, 보조금 집행 기간은 사업종료일 까지)</li> <li>·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최대 30%까지 소급 편성 가능</li> </ul>
2개 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의신작 사업에 음악, 창작오페라 2개분야 신설</li> <li>· 창작오페라 분야의 경우 2021년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 선정단체(자동진출) 5팀 외, 신규 단체 지원 신청 가능</li> </ul>
예술인고용보험·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자 전원 예술인고용보험·상해보험 필수 가입 (보조금 내 편성 지원)</li> </ul>
영유아 돌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 대상 영유아 돌봄비 지원(보조금 내 편성 지원)</li> </ul>
중복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창작실험활동지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불가</li> <li>· 2022년 사전제작활동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불가</li> <li>· (2022~2024)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불가</li> </ul>

### 1. 사업목적

- 경쟁을 통한 단계별 제작지원(기획→쇼케이스→본 공연)으로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창작오페라 분야의 우수한 신작 발굴
- 공연예술현장의 참신하고 실험적인 동시대의 창작공연이 제작되고, 우수 창작공연 레퍼토리로의 성장과 국내외 무대로 진출하는 토대 마련

## 2. 신청자격

### ○ 신청대상

-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2022.3월~5월 중, 쇼케이스(낭독·실연) 심의 참여가 가능한 예술단체
- (무용, 음악, 전통예술) 2022.3월~5월 중, 쇼케이스(낭독·실연) 심의 참여가 가능한 예술단체 및 개인

## 3.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사업 : 공연되지 않은 창작작품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① 공연화 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공연,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단, 유료공연 제외)으로 간주
②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공모결과 발표일 기준)
③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저작권 분쟁소지가 있는 작품의 경우, 공연 이용·활용에 대한 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④ 심의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⑤ 심의위원회에서 창작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하는 작품(단순 번역극, 전통예술 원형의 단순재현 및 일부차용 등)
⑥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부터 <올해의신작> 본 공연으로 초연되기 이전까지 해당 작품의 공연계획 혹은 일정이 있는 경우
⑦ 국악 관현악작품
⑧ 정기연주회, 발표회 등 공연예술 단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

※ (신설) 올해의신작 음악분야 지원대상 사업 안내
· 실내악, 관현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곡을 중심으로 폭넓은 관객과의 소통이 가능한 기획 공연 (* 전체 공연의 1/3 이상이 창작곡으로 이루어진 공연)
· '음악'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예술 형태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예시) 합창극, 음악극, 전시·공연형 사운드 아트, 실험 및 전자음악 등
※ 서양악기, 국악기, 전자악기 등 다양한 편성 및 규모 가능

○ 사업상세 내용

- 1단계 서류→2단계 PT 및 인 터뷰→3단계 쇼케이스(낭독·실연)를 통해 올해의신작 본 공연 최종 작품 선정
- 쇼케이스:1,2차 서류, PT 및 인터뷰 심의를 통해 쇼케이스 지원 작품 선정 및 제작비 지원

※ 장르별 쇼케이스 방식 안내			
방식	장소 (예정)	장르	상세 내용
낭독	CJ 아지트 (대학로)	연극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정(2022. 3월~4월 예정)및 극장에서 진행 · 낭독공연 쇼케이스 심의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창작 뮤지컬	(세부일정 및 내용은 쇼케이스 참가대상 결정 후 안내) · 작품당 연극 60분, 창작뮤지컬 80분 동안 낭독공연 진행 · (창작뮤지컬) 5인조 이내 라이브 반주
실연	문예회관 (미정)	공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정(2022. 3월~4월 예정)과 장소(중극장)에서 진행 · 실연형 쇼케이스 심의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세부일정 및 내용은 쇼케이스 참가대상 결정 후 안내)
		무용/ 전통 예술	· 작품 당 20분 동안 쇼케이스 진행
		음악	· 최대 20분 이내 창작곡 실연 쇼케이스 진행(여러 작품의 합산, 또는 대형 작품 중 일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구성) ※ 완성된 총보 제출 필수, 미디음원 제출 가능(추천) ※ 대규모 편성일 경우, 소규모 편성으로 편곡하여 연주 가능(편곡 악보 제출) ※ 실연심의 공간의 규모에 따라 편성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예시, 10인이하 실내악 편성 등)
		창작 오페라	· 30분 동안 쇼케이스 진행 ※ 2022년도 올해의신작(후보) 오페라분야 선정 단체는 2021년도 창작오페라발굴지원사업(2개년 사업) 선정 단체와 쇼케이스 심의 경합 ※ 실연심의 공간의 규모에 따라 편성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예시, 20인조 오케스트라 등)
· 쇼케이스는 심의위원회, 관객평가단을 대상으로 공개될 예정임			

- 본 공연 : 쇼케이스(낭독, 실연)를 통해 최종 본 공연 작품을 선정하여 제작비, 공연장, 스태프, 통합홍보 지원

[공연장 및 공연일정]

- 쇼케이스 심의를 통해 <올해의신작>에 선정된 연극, 무용, 전통예술,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시하는 공연장(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초연을 원칙으로 함
- ※ 단, 창작뮤지컬, 음악, 창작오페라 작품은 제외
- 단, 감염병 유행, 장르 및 공연의 특성, 극장의 경영환경 등에 따라 위 극장 사용이 불가할 경우 탄력적으로 별도 공연장을 대관할 수 있음(선정단체의 개별 대관도 인정됨)
- 소극장 수준 이상의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극장 외 실내 또는 실외 공간도 활용 가능
- 2022년도 <올해의신작> 본 공연은 2023.1월~2023.2월 중 추진 예정으로, 선정자(단체) 임의로 공연일정을 선택할 수 없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됨

○ 지원내용

- 공연제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금액
- 공연 관련 사례비,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 회계검사비 등
- ※ 올해의신작 본 공연의 경우 총 소요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책정
- ※ 단, 심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쇼케이스는 자부담 의무 없음

○ 지원규모 : 작품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구분	쇼케이스	본 공연
연극	최대 2천만원	최대 2억원
창작뮤지컬	최대 2천 5백만원	최대 2억원
무용	최대 2천만원	최대 6천만원
음악	최대 2천만원	최대 1억원
전통예술	최대 2천만원	최대 6천만원
창작오페라	최대 2천만원	최대 1억 5천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지속되어 쇼케이스 진행이 불가하더라도 현행대로 쇼케이스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연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심의를 통해 최종 본공연 지원대상 선정 예정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세목	쇼케이스	본공연	비고
일반수용비	사례비 무대, 소품, 의상 제작비 회계검사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 돌봄비	사례비 무대, 소품, 의상 제작비 회계검사수수료 홍보비,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 돌봄비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단, 지원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인정)
임차료	연습실 대관비 악기 임차비	연습실, 극장 대관비 악기 임차비 조명, 무대 관련 장비 물품 임차비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 홍보관련 우편요금	※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단,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 창작오페라분야의 경우, 창작자(작곡가+극작가)의 사례비를 전체 보조금의 10% 이상 책정 필수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2022년도 사업예산 : 39억 3천 5백만원

- 연극 : (쇼케이스) 2억원, (본공연) 8억원
- 창작뮤지컬 : (쇼케이스) 2억 4천만원, (본공연) 7억 5천만원
- 무용 : (쇼케이스) 2억원, (본공연) 4억원
- 음악 : (쇼케이스) 1억 5천만원, (본공연) 4억원
- 전통예술 : (쇼케이스) 1억원, (본공연) 2억 5천 5백만원
- 창작오페라 : (쇼케이스) 1억 4천만원, (본공연) 3억원

## 4. 지원심의

###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대상자에 한해) 작품 구현 및 신작 창작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
- (3차) 쇼케이스(낭독형, 실연형)심의 : (대상자에 한해) 무대화를 통한 심의, 관객 평가점수 반영

※ 본 사업은 심의평가의 일관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단이 전체 단계별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전담심의위원체로 운영되며, 명단 구성 등은 심의 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심의 추진방안	
<b>·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b>	
- (1,2,3차 심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	
※ PT 및 인터뷰 심의는 경우에 따라 온라인 영상 인터뷰로 대체 될 수 있음	
<b>·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b>	
- 공연장에서의 쇼케이스 심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본공연 준비기간 확보 등 최소한의 공연 제작여건 보장을 위해 2022.6.30.을 기한으로 연기함(대관공연장 사정상 취소시)	
- 위 기한 내 진행 불가 시 다음과 같이 영상 심층심의로 대체함 : 장르, 단체별 일정을 배정하여 심의대상 단체의 자체적 최종 리허설을 심의용 영상으로 촬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일괄 지원) → 영상결과물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재택심의) → 지원신청서 및 영상결과물을 바탕으로 비대면 인터뷰 심의 진행 → 최종 지원작 및 지원금액 배정	
※ 쇼케이스 대체 심의를 통한 최종 지원작 및 지원금액 배정은 2022.7.31.까지 확정함(2022.8월초 결과발표)	

※ 상기 추진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각 단계별로 공연장 여건, 작품의 특수성 등에 따라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및 추진방식 변동 가능

### ○ 지원심의 기준

- 1차 서류심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작품성 (예술적 우수성/ 차별성) (50%)	[창작의도 및 소재] ·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뚜렷한가? · 작품의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작품 구성안(창작기획안, 주제, 시놉시스 등)] · 창작의도가 작품 구성안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연출 또는 안무 및 무대] · 연출 또는 안무, 무대구성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10%)	[예산] · 본 공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일정계획] · 사전 제작부터 본 공연까지의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실행역량의 우수성 (30%)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태프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관객개발] ·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기대효과 (지속성/파급력) (10%)	· 작품이 우리 공연예술계의 동시대 새로움을 견인할 수 있는가? · 우수 창작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3차 쇼케이스 심의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작품성 (예술적 우수성/ 차별성) (50%)	· 창작(안무/연출/제작/극작/작곡) 의도가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 실연 또는 낭독공연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창작(극작/연출/제작/작곡) 의도가 잘 전달되는가? · 정식공연으로 발전시킬 경우 미학적 완성도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10%)	[예산] · 본 공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일정계획] · 본 공연까지의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실행역량의 우수성 (20%)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태프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 신청자(단체)는 사업수행 능력을 적절히 보여주는가? · 실연은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내용에 부합하는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실행역량의 우수성 (20%)	[관객개발] ·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관객평가 (20%)	관객평가단 점수 합산

※ 관객평가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공연장 상황, 장르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객평가 점수 20%는 반영하지 않음

##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 ○ 제출자료

-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지원신청서 외 대본, 악보, 음원 등의 첨부파일은 웹하드 제출(추후 안내)
- ※ 1,2차 심의를 통과한 단체에 한하여, 3차 실연심의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제출자료	구분(분야별 상이)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연극	무용	전통 예술	창작 뮤지컬, 창작 오페라	음악	
① 지원 신청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2022년도_올해의신작_지원신청서_단체명)</li> <li>·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li> </ul>
② 대본	필수	선택	선택	필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양식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웹하드 제출 (*지정된 파일양식 외 접수 불가)</li> <li>· (음악) 음악극 작품일 경우, 공연예정 작품 1개</li> <li>· (오페라) 공연예정 작품 1개(작품개요서(리브레토) 포함하여 30분 이상으로 구성)</li> </ul>
③ 악보	-	-	선택	필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 규격, PDF 형식으로 웹하드 제출 (* 지정된 파일양식 외 접수 불가)</li> <li>· (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최소 8곡 이상 필수</li> <li>· (음악) 대규모 관현악,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음악극 등 공연예정 작품 20분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출(* 실험·전자음악의 경우, 악보가 아닌 기술설명서와 영상자료 링크 제출 필수)</li> <li>· (오페라) 공연예정 작품 30분 이상으로 구성하여 총보악보(보컬스코어 포함) 제출</li> <li>*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 별도 표기 필수</li> </ul>

제출자료	구분(분야별 상이)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연극	무용	전통 예술	창작 뮤지컬, 창작 오페라	음악	
④ 음원	-	-	선택	필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p3 형식으로 웹하드 제출 (*지정된 파일양식 외 접수 불가)</li> <li>· (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최소 4곡 이상 필수 ※ 음원은 드라마, 음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 녹음(육성) 파일 제출</li> <li>· (음악) 대규모 관현악,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음악극 등 공연예정 작품 20분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출</li> <li>· (오페라) 공연예정 작품 30분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출(피아노 반주, 컴퓨터(MIDI)를 이용한 음원 가능)</li> </ul>
⑤ 저작권 관련 계약서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li> </ul>

##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쇼케이스 제작지원금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분야 061-900-2193
  - 창작뮤지컬분야 061-900-2196
  - 무용분야 061-900-2227
  - 전통예술분야 061-900-2204
  - 음악·창작오페라분야 061-900-2205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 주요 변경사항

구분	세부내용
코로나19 대응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단체는 단체 구성원과 관객의 안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을 준수</li> <li>·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변경은 지원신청서 상의 기존 목적과 선정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무관객 공연영상제작, 고품질 영상제작, 워크숍, 비평 및 리서치 등의 방식으로 대체 가능, 사업취소는 단체의 판단에 따름</li> <li>· 사업이 변경, 취소된 경우 기 집행한 비용은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에서 정산 가능(단, 보조금 집행 기간은 사업종료일 까지)</li> <li>·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최대 30%까지 소급 편성 가능</li> </ul>
예술인고용보험·상해 보험 가입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자 예술인고용보험·상해 보험 필수 가입(보조금 내 편성 지원)</li> </ul>
영유아 자녀돌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 대상 영유아 돌봄비 지원(보조금 내 영유아돌봄비 편성 지원)</li> </ul>
중복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2024)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불가</li> </ul>
지원 장르 세분화 운영	국악(전통예술), 양악(음악) 분야 2트랙 운영

### 1. 사업목적

- 국내 창작곡 발굴과 발표기회 확대를 통한 창작음악 활성화 기반 조성
- 국내 작곡가 창작곡 연주(재연) 지원을 통한 창작곡 확산 및 유통 활성화

###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립 예술단체(국악, 양악)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단체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운영비 지원을 받는 음악 관련 단체
- ② 단체의 대표자와 연주 작품의 작곡가가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

### 3. 사업내용

○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

- 국악, 양악 장르 2 Track 운영, 지원 신청시 국악(전통예술), 양악(음악) 선택 필수

구분	지원대상 사업			
국악 (전통예술)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가 창작한 실내악(2인 이상)·관현악 작품 등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재연하는 사업(앨범(음반·음원)제작 및 배포)			
	※ 상세내용			
	<table border="1"> <tr> <td>연주 단체 재공연</td> <td>· 사업 구현 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극장 외 실내 또는 실외 공간도 활용 가능</td> </tr> <tr> <td>앨범 제작 (음반·음원)</td> <td>· 실물 앨범(CD, USB 등)이 아닌 음원으로 제작 및 발매 가능하며, 20분 이상 구성 · 실물 앨범 및 온라인 음원 모두 국내외 음원 플랫폼에 등록하여 유통 추진</td> </tr> </table>	연주 단체 재공연	· 사업 구현 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극장 외 실내 또는 실외 공간도 활용 가능	앨범 제작 (음반·음원)
연주 단체 재공연	· 사업 구현 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극장 외 실내 또는 실외 공간도 활용 가능			
앨범 제작 (음반·음원)	· 실물 앨범(CD, USB 등)이 아닌 음원으로 제작 및 발매 가능하며, 20분 이상 구성 · 실물 앨범 및 온라인 음원 모두 국내외 음원 플랫폼에 등록하여 유통 추진			
양악 (음악)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가 창작한 관현악(협주곡)·실내악, 합창곡 등 편성의 양악 작품을 재연하는 사업(앨범(음반·음원)제작 및 배포)			
	※ 상세내용			
	<table border="1"> <tr> <td>연주 단체 재공연</td> <td>· 사업 구현 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극장 외 실내 또는 실외 공간도 활용 가능</td> </tr> <tr> <td>앨범 제작 (음반·음원)</td> <td>· 실물 앨범(CD, USB 등)이 아닌 음원으로 제작 및 발매 가능하며, 30분 이상 구성 · 실물 앨범 및 온라인 음원 모두 국내외 음원 플랫폼에 등록하여 유통 추진 · 앨범 유통 및 홍보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영상(녹음 및 제작 영상, 뮤직 비디오, 하이라이트, 이미지 영상 등) 필수 제작</td> </tr> </table>	연주 단체 재공연	· 사업 구현 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극장 외 실내 또는 실외 공간도 활용 가능	앨범 제작 (음반·음원)
연주 단체 재공연	· 사업 구현 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극장 외 실내 또는 실외 공간도 활용 가능			
앨범 제작 (음반·음원)	· 실물 앨범(CD, USB 등)이 아닌 음원으로 제작 및 발매 가능하며, 30분 이상 구성 · 실물 앨범 및 온라인 음원 모두 국내외 음원 플랫폼에 등록하여 유통 추진 · 앨범 유통 및 홍보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영상(녹음 및 제작 영상, 뮤직 비디오, 하이라이트, 이미지 영상 등) 필수 제작			

※ 유의사항

- 서로 다른 단체에서 특정 작곡가의 동일작품에 대해 중복 신청하였을 시,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 2인 이상의 창작곡 각 1개 작품 이상 재연 및 앨범 제작할 경우 지원
- 연주단체 재공연 및 앨범(음반·음원) 제작 시 전체 프로그램 1/20이상은 창작곡으로 구성
- ※ 단, 수록되는 창작곡은 초연을 마친 한국창작곡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연주단체 연주비, 작곡가 작품 사용료, 지휘자 및 협연자 사례비 등 사업구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금액

○ 지원규모 : 작품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구분	연주단체 재공연	앨범(음반·음원)제작
국악	최대 3천만원	최대 3천만원
양악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비(연주자, 지휘자, 스텝 등)</li> <li>· 작곡가 작품 사용료</li> <li>· 무대, 의상, 소품 제작비</li> <li>· 앨범(음반·음원) 제작비</li> <li>· 음원 등록(유통) 수수료</li> <li>· 홍보 영상 제작비</li> <li>· 운송비</li> <li>· 홍보비</li> <li>· 회계검사수수료</li> <li>· 예술인고용보험료</li> <li>· 영유아 돌봄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단, 지원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인정)</li> <li>*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예술인고용보험료·상해보험 가입 필수</li> </ul>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li> <li>· 연습실, 극장 대관료</li> </ul>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관련 우편요금</li> <li>· 상해보험료</li> </ul>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2022년 사업예산 : 2억원

####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사 :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단체 활동증명자료 검토

○ 심의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품성 (예술적 우수성/ 차별성) (30%)	· 연주 창작곡은 독창적이며 음악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 창작곡의 재연으로 인한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가? · 창작곡 연주가 향후 연주 창작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사업계획 및 실행역량의 우수성 (30%)	·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가? · 단체는 창작음악 활성화를 위한 역량과 구현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작곡가의 창작 의도를 구현할 만큼 우수한 연주력을 갖추고 있는가? · 지휘자, 음악감독 등 참여인력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예산계획의 타당성 (10%)	· 신청사업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 예산 항목 및 산출 근거가 적절한가?
관객개발 및 유통 확산 기대효과 (30%)	· 구체적인 관객모집, 앨범(음반, 음원) 배포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연주 창작곡의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최근 5년 이내 오작교프로젝트, ARKO한국창작음악제 통한 창작곡의 재연에 대한 가산점(5점) 부여

####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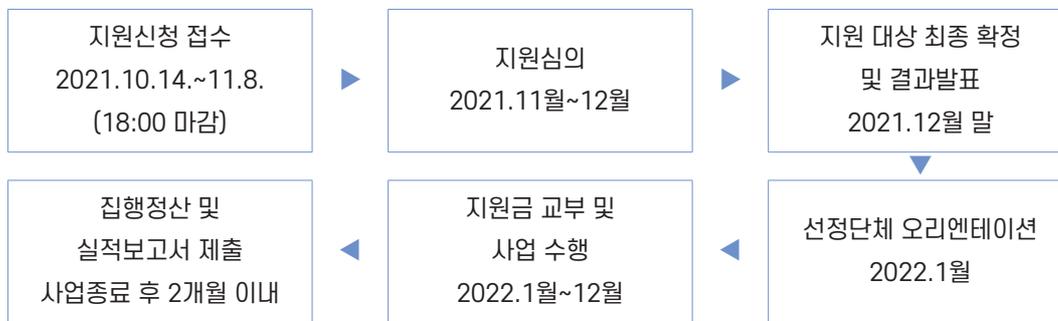
<p>※ 신청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li> <l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li> </ul>
---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파일명 : 2022년도_지속연주지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필수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NCAS) 통해 제출
2. 단체 활동증명자료		
· 최근 5년 이내 창작곡 공연 실적 증명자료 - 별도의 양식없이 포트폴리오 형태의 PDF 파일로 제출 (20매 내외) - 창작곡 공연실적을 확인할 수 연주회, 음반제작, 프로그램 북 등 포트폴리오 자유구성 - 해당 작곡가의 최근 3년 창작곡 발표실적도 포함 ※ 오작교프로젝트, ARKO한국창작음악제 통해 발표된 창작곡은 별도 중요표기	필수	웹하드에 업로드 제출
· 지원신청 작품악보 및 음원 파일 - 지원신청작품(창작곡) 악보(A4 PDF본) 및 음원 파일(mp3) - 파일명 : 작곡가_작품명.pdf / 작곡가_작품명.mp3	필수	웹하드에 업로드 제출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205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